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 축 사

2019. 2. 11. (월) 09:00  
은행회관 세미나실(14층)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기술의 시대입니다.

핀테크라는 새로운 시류가

곳곳에서 금융의 판을 바꾸고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이어주는 P2P금융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금융입니다.

시장에서는 P2P금융을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이자,

대안금융(Alternative Finance)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대안금융 시장에서 P2P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수준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이러한 가운데,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여

P2P금융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핀테크 산업 발전과

P2P금융 법제화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민병두 정무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청회를 준비해 주신 손상호 금융연구원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P2P업계,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II. P2P금융의 의의

---

P2P금융은 전통적 금융에 비해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금융시장에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대출과 투자가  
금융기관 없이 연결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 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차입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 비계량정보 등을 활용한 심사 기법과  
다수 투자자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은  
기존에 취급하기 어려운 중금리대출, 동산담보대출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금융확장”** 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저신용층,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P2P업체를 통해 모든 정보가 집중되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연결되는 거래구조는  
**“복합적 이해상충”** 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내포합니다.

제도적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Ⅲ. P2P금융 법제화 필요성

---

그동안 정부는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금융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P2P금융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16년말 6천억원에 불과했던 대출규모는

‘18년말 약 5조원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관련된 개인 투자자수도 2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규모에 걸 맞는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근거 법률 부재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입니다.

다행히 민병두 정무위원장님께서 지난 ‘17년 7월에 최초로 P2P금융 법률안을 발의하여 법제화 추진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IV. P2P금융 법제화 기본 방향

---

여러분,

오늘 공청회를 통해 여러 전문가 분들의  
좋은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전에 앞서, 제가 그동안 고민해 온  
기본적인 방향과 당부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 무엇보다도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 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또한, 형성된 생태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現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P2P금융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감안하여  
그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③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는

그 무엇보다 충실하게 반영되어져야 합니다.

P2P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에 관여하면서도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계에서도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와 혜택 없이는  
P2P금융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한편,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모델을 원활하게 수용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제도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 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V. 마무리 말씀

---

여러분,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톰 피터스(Tom Peters)는 이미 10년 전에 벤치마킹(Bench Marking)이 아닌 퓨처마킹(Future Marking)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금융부문도 이미 있는 것을 모방하는 방식보다는 미래에도 통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서 P2P금융을 제도화한 나라는 아직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퓨처마킹의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P2P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공청회를 개최를 축하하며, 뜨거운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